

대구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가단38569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고A

피고대한불교총B중

변론 종결2015. 11. 11.

판결 선고2015. 11.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ㄱ) 부분 257㎡ 지상에 있는 B상 석불, 재단, 단군 할아버지 좌불상, 재단 및 위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블록조 철파이프 단층창고 9m'를 각 철거하고,

나. 위 선내 (ㄱ) 부분 257㎡ 및 (ㄴ) 부분 9㎡를 각 인도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ㄱ) 부분에 피고 소유의 석불, 재단, 단군 할아버지 좌불상, 재단(이하 '이 사건 석불 등'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피고 소유의 블록조 단층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가 각 존재하여 피고가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창고 및 석불 등의 철거 및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원고는 C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으나 C가 이 사건 석불 등과 창고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한다).

나.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참조).

또한,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참조).

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 등 부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점, D 대웅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등 재산을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의 신도에 관한

자료 내지 신도들이 사찰 운영과 관련하여 단체를 조직하였다거나 규약을 마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위 사정들에 나항에서 살펴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창건주인 C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상대로 한 소로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재혁

별지